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1.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세무과)
- 제출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2. 11. 3.(금)
- 검토기간: 2023. 11. 3.(금) ~ 11. 10.(금)

2.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사항과 관련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7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시행 2023. 7. 10.] (2023.6.9.제정)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8조)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2023년 12월 31일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에 대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조례 제1473호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붙임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3. 9. 21.~10. 12.) 결과: 의견 없음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문화재·외국인투자·벤처기업·우수 향토기업·고용창출기업·연구개발특구 지역·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과 자동이체 등 납부 세액 공제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조례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3년 이내 취득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 되어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최근 3년간 구세 감면세액에 근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구세 감면 규모는 연간 9천만원 정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87,667	△90,297	△93,006			△270,970
지방세 수입의 순 감소 예상액	△87,667	△90,297	△93,006			△270,970
세 출						
△△△△ △△△△						
재원 조달						
소 계						
구 비						
기 타 (민자 등)						

※ 구세 연평균 증감율(3.0%)로 반영하여 추계

참 고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비용추계(2023년 감면 예상액)

(단위: 천원)

구 분	감면 예상액	
	건수	금액
제4조(외국인투자예 대한 감면)	2	417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2	23,224
제8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16	10,922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	40
제10조(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 공제)	97,572	50,511
계	97,593	85,114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3.3.14.]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을·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폐지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6.29.]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2023.10.4.]

제9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20.>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10.12.20.>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30., 2010.12.20>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개정 2010.12.20.>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개정 2017.10.30.>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20, 2017.10.30.>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 <삭제 2020. 12. 3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0. 12. 31.]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개정 2018. 5. 11.)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의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이하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

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되, 제3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